인천 신흥동3가 숭의역 엘크루 민영주택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무순위 청약시 자격요건

※ 당첨 후 계약을 포기 하시면 타 신규 분양 단지 청약제한 기간 7년 적용됨(청약과열지역)
※ 무순위 모집공고일 이전 현재 등본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일 것
※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은 세대 속한 구성원 전부 무주택자 일 것
※ 계약금 10%가 준비된 자
※ 본 단지는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금지 되어 있으며 등기 이전 전까지 전매 및 매매가 불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사회적으로 “묻지마 청약”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 상실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분양사무소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분양사무소 운영 안내
■ 「인천 신흥동 3가 숭의역 엘크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분양사업장 관람을 방문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인천 신흥동 3가 숭의역 엘크루 홈페이지((http://숭의역엘크루.com)를 통해 방문예약,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 운영관련 안내
- 사전방문 예약자 분양사무소 방문 시 본인 포함 동반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의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분양사무소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입장 인원이 제한됨)
- 분양사무소 방문 일정은 당첨자발표 이후 개별 통보 및 방문예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분양사무소 방문 시 당첨자의 분양사무소의 방문 날짜 및 시간을 예약 후 입장이 가능하며, 분양사무소 체류시간 등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분양사무소 방문 시에는 당첨자 및 계약대리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 분양사무소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분양사무소 입장 시 안면인식 체온계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분양사무소 입장 전 및 주택전시관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출입국 사실 증명서 및 여권 확인 예정으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에 최근 1개월 내에 출입국 사실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하여 체류지 확인 필요)
- 분양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안면인식 체온계, 비접촉 체온계, 소독발판, 손 소독제 등)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방문예약제 운영으로 인한 관람 인원 조정 등으로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1599-6385)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 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면, 청약 신청 시 직접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분양사무소 관람, 당첨자의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 3. 30.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996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을 포함한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 5. 20.이며, 주택관리번호는2022910150입니다.(주택소유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여 당첨시, 재당첨 제한으로 부적격 처리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 적용받지 아니한 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7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없음)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7호)	7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 제2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table>
<tr><th>구분</th><th>무순위 사후접수</th><th>당첨자발표</th><th>당첨자서류제출</th><th>계약체결</th><th>입주자 선정 및 동· 호수 배정</th></tr>
<tr><td>일정</td><td>5월 30일(월) ~ 5월 31일(화)</td><td>6월 9일(목)</td><td>6월 13일(월) ~
6월 14일(화)</td><td>6월 17일(금) ~
6월 18일(토)</td><td rowspan="3">·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에 대하여 SMS 등 개별통지 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td></tr>
<tr><td>방법</td><td>인터넷 청약
(09:00 ~ 17:30)</td><td>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td><td colspan="2">-</td></tr>
<tr><td>장소</td><td>■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APT 무순위] 메뉴에서 신청
■ 청약통장 불필요</td><td>■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에 10일간만 게시)</td><td colspan="2">당사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35,
해피타운 2층)</td></tr>
</table>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 · 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며,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는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발급받으시어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홈은 신청자 개인의 인터넷 사용환경 등으로 인한 청약신청 불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인천광역시 증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과 무관하게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 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고, 재당첨제한 등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이며,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청약신청은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은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함.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2명 이상 당첨 시 재당첨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청약과열지역 7년) 적용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주택에 당첨 후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79번지 외 25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41층 3개동 총 440세대 중 잔여세대 28세대
■ 입주시기 : 2025년 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실)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	잔여세대 동 · 호수	
						동	호수
민영 주택	2022910150	01	059.1269A	59A	17	101 / 102 / 103	704, 1204 / 205, 404, 705, 1605, 1804, 2905, 3005 / 1603, 1703, 2102, 2202, 2502, 3103, 3503, 3603
		02	059.1771B	59B	1	102	502
		03	084.5341A	84A	10	101/ 102 / 103	2101 / 801, 901, 1001, 1101, 1301, 1601, 2301 / 2101, 3501
	합 계				28	-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	층	호실	대지비	건축비	분양금액	계약금	중도금(70%)							잔금
							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7차(10%)	20%
							계약시	2022.06.30.	2022.08.30.	2022.10.31.	2023.10.30.	2024.02.29.	2024.07.30.	2024.12.30	입주지정일
59A	101	7	704	34,833,000	335,527,000	370,360,000	37,036,000	37,036,000	37,036,000	37,036,000	37,036,000	37,036,000	37,036,000	37,036,000	74,072,000
		12	1204	34,833,000	342,897,000	377,730,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75,546,000
	102	2	205	34,833,000	320,527,000	355,360,000	35,536,000	35,536,000	35,536,000	35,536,000	35,536,000	35,536,000	35,536,000	35,536,000	71,072,000
		4	404	34,833,000	320,527,000	355,360,000	35,536,000	35,536,000	35,536,000	35,536,000	35,536,000	35,536,000	35,536,000	35,536,000	71,072,000
		7	705	34,833,000	340,527,000	375,360,000	37,536,000	37,536,000	37,536,000	37,536,000	37,536,000	37,536,000	37,536,000	37,536,000	75,072,000
		16	1605	34,833,000	342,897,000	377,730,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75,546,000
		18	1804	34,833,000	342,897,000	377,730,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75,546,000
		30	2905	34,833,000	342,897,000	377,730,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75,546,000
		31	3005	34,833,000	342,897,000	377,730,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75,546,000
	103	16	1603	34,833,000	342,897,000	377,730,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75,546,000
		17	1703	34,833,000	342,897,000	377,730,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75,546,000
		22	2102	34,833,000	342,897,000	377,730,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75,546,000
		23	2202	34,833,000	342,897,000	377,730,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75,546,000
		26	2502	34,833,000	342,897,000	377,730,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75,546,000
		32	3103	34,833,000	342,897,000	377,730,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75,546,000
		36	3503	34,833,000	342,897,000	377,730,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75,546,000
		37	3603	34,833,000	342,897,000	377,730,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37,773,000	75,546,000
59B	102	5	502	34,863,000	341,757,000	376,620,000	37,662,000	37,662,000	37,662,000	37,662,000	37,662,000	37,662,000	37,662,000	37,662,000	75,324,000
84A	101	22	2101	49,802,000	475,488,000	525,290,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105,058,000
	102	8	801	49,802,000	475,488,000	525,290,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105,058,000
		9	901	49,802,000	475,488,000	525,290,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105,058,000
		10	1001	49,802,000	475,488,000	525,290,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105,058,000
		11	1101	49,802,000	475,488,000	525,290,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105,058,000
		13	1301	49,802,000	475,488,000	525,290,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105,058,000
		16	1601	49,802,000	475,488,000	525,290,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105,058,000
		24	2301	49,802,000	475,488,000	525,290,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105,058,000
	103	22	2101	49,802,000	475,488,000	525,290,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105,058,000
		36	3501	49,802,000	475,488,000	525,290,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52,529,000	105,058,000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	20,000,000	2,000,000	18,000,000
59B	20,000,000	2,000,000	18,000,000
84A	25,000,000	2,500,000	22,500,000

- 발코니 확장금액은 분양주택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함.(잔금은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은 부분적인 확장 선택이 불가능함.
- 발코니 확장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동안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질 품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태풍, 강풍, 우천등으로 창호에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 및 우수, 배수드레인 배관등이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비확장 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는 확장 시 제공품목 등 구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시와 비확장 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 세대가 확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정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는 물을 사용하실수 없음.
- 발코니(일부)또는 실외기실 공간에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등이 변경될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시 일부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됨.
- 상기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입주시 계약자가 개별 납부해야 함.

■ 발코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 계약시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별도 지정 통보 함.

■ 추가선택 옵션품목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기타 추가선택 옵션 품목 등의 계약 작성은 추후에 일정 등을 통보하기로 함.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 자격

-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 본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받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시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청약신청 등 제한을 적용받음.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과거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관리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기준 재당첨제한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같은 세대에 2인 이상 당첨된 자.

■ 당첨자 제출서류

- 서류제출 안내 : 2022.06.13.(월) ~ 06.14.(화) / 10:00 ~ 17:00 / 당사 견본주택(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35, 해피타운 2층)
- 당첨자의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의 동호 추첨, 계약에 앞서 사전서류접수를 통해 자격검증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서류제출 기한 내 견본주택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사업주체 및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자격, 주택소유정보 등 적격여부를 판단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당첨자의 지위가 상실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공 통 서 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공고일 현재 거주지 확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주소변동사항 확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거주지 제한이 있는 경우 제4조 제6항에 따른 국내 거주 유무 및 거주 기간 판단이 필요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추 가 서 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무주택 소명서류, 사업주체 요구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소형저가주택 증명서류 등
제3자 대리 계약시 (본인 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확인(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당사 견본주택 비치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당첨자 계약체결

구 분	계약체결 일시	장 소
당 첨 자	2022.06.17.(금) ~ 2022.06.18.(토) /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35, 해티파운 2층

- 계약체결일 및 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전자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사이트 또는 우체국 및 은행에서 구입), 신분증,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적격확인 서류(해당자)

※ 인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므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15만원)를 납부 및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분양계약서에 첨부하고 추후 등기시 소인처리 하여야합니다. 본 분양계약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순위 청약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 : 정당계약자의 자격검증이 완료된 후 선정 방식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예비입주자 동·호수 계약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정당계약자의 자격검증 후 별도로 안내하는 일자에 동 · 호수 선정 후 즉시 계약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Ⅲ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이나, 당첨(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고, 향후 다른 주택에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향후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제한 기간 향후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없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 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3.30.)를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숭의역엘크루.com)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홍보관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35, 해피타운 2층

■ 분양문의 : 1599-6385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